

#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
사업명	2023년 보호자 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					
사업기간	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					
신청자명칭 (성명)	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	대표자	이현석			
소재지 (주소)	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	전화번호	02-2276-7781			
지방보조금 교부신청 (단위: 천원)	총사업비	지방보조금			자기자본 부담액	보조금 보조율 (%)
		지원 결정액	기 교부액	금회 교부신청액		
	301,900	301,900	-	301,900	-	100
지방보조 사업목적	보호자 없이 응급실을 방문한 취약계층 응급환자에게 보건·복지 지를 연계한 맞춤형 전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					
지방보조 사업의 내용	- 보호자 없는 환자 간호·간병서비스 - 취약계층 환자 공공이송 서비스					
<p>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3년 8월 18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단체명 :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(직인)</p>						
<p><b>서울특별시장 귀하</b></p>						
<p>※ 첨부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계획서 1부(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)</li> <li>2. 청구서(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) 1부 - 예금주 명의를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</li> <li>3.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</li> <li>4. 청렴서약서 1부</li> <li>5. 결제전용카드(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체크카드) 사본 1부</li> </ol> <p>※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</p>						



##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
### □ 지방보조사업자

단체명	대표자	사업자 등록번호	소재지	전화번호
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	이현석	120-82-01328	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	02-2276- 7781

### □ 신청 지방보조사업

(단위 : 천원)

보조사업명	총사업비					사업기간
	계	국고보조금	시·도 보조금	시·군·구 보조금	자부담	
보호자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	301,900		301,900			2023.01.01. ~12.31

※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

### □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별	보조금교부 자치단체	보조사업명	보조액	정산 반환액	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
2022	서울특별시	보호자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	72,000	64,722	-

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.

2023. 8. 18.

지방보조사업자  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   대표 이현석 (직인)



## 2023 보호자 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며,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### < 벌칙 규정(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) >

#### 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97조)

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,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,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·폐지,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,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#### 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98조)

-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, 또는 대리인, 사용인,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

2023. 8. 18.

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대 표 이현석 (서명)

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센터 장 박현경 (서명)

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파트 장 임채영 (서명)

